

학 교 법 인 장 춘 학 원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적임원	8인	2인
참석임원	7인	2인

1. 일시 : 2018. 4. 26.(목) 11:30~13:00 (회의소집 통보일 : 2018. 4. 17.)
2. 장소 : 안동과학대학교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 임원	이사 7명	신정용, 권기덕, 권재주, 임규봉, 서재수, 심용선, 김선웅	
	감사 2명	전광표, 이시우	
불참 임원	이사 1명	김미현	
	감사 0명		

4. 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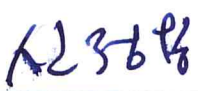
- 1) 2017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2) 2017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회의록 대표 간(間)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5) 기타사항

5. 회의내용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개회시간이 되어 심홍재 사무국장이 참석임원을 보고하자 신정용 의장은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하다.

심홍재 사무국장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이사회의 구성과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대 표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	-----	---	-----	--	-----	---

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1호 2017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심홍재 사무국장에게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1호) 2017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학교부담 승인금액,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2017회계연도 법인 결산 총액 78,657,671원에 대한 내역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및 교육부 결산유의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법인회계 결산 현황을 배부된 자료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다.

이시우 감사는 2017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자료를 감사한 결과 2017회계연도 법인의 일반사무 및 회계처리는 모두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과도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음을 보고하다.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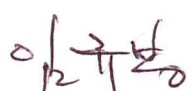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김선웅 이사는 외부회계감사와 내부감사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2017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개진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1호 2017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규봉 이사의 동의와 권재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2호 2017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심홍재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2호) 2017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2017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등록금회계 결산총액 15,865,474,685원과 비등록금회계 12,037,167,315원의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해 과목별 주요 내용 및 금액을 배부된 회의자료를 낭독하며 설명하고, 그 동안 대학의 주요현안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다.

대 표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	-----	---	-----	--	-----	---

이시우 감사는 2017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자료를 감사한 결과 2017회계연도 대학의 일반사무 및 회계처리는 모두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며,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과도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음을 보고하다.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권기덕 이사는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운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목표 및 중장기 발전계획 달성을 위하여 적절히 집행된 2017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개진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2호 2017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재수 이사의 동의와 임규봉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3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심홍재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3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등 변경사항, 교직원 수당 관련 사항 명시,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변경사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 변경 등 정관 변경 사항을 배부된 자료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다.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임규봉 이사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대학의 현황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작성된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개진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3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재주 이사의 동의와 심용선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

대 표 간서명	이사장	신정용	이 사	권재주	이 사	임규봉
------------	-----	-----	-----	-----	-----	-----

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4호 이사회회의록 대표 간(間)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상정하다.

(의안 제4호) 이사회회의록 대표 간(間)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권재주 이사는 신정용 이사장과 임규봉 이사, 서재수 이사를 이사회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으로 선출할 것을 개진하다.

신정용 의장은 김선용 이사의 동의와 심용선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이사회회의록 대표 간(間)서명 임원으로 신정용 이사장, 임규봉 이사, 서재수 이사를 선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고, 의안 제4호 기타사항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지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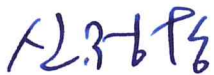
(의안 제5호) 기타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교육자료를 상세히 안내하고, 법인 및 대학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다.

임원일동은 심홍재 사무국장으로부터 법인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하시다.

6. 폐회선언

신정용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13:00)

대 표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	-----	---	-----	--	-----	---

학교법인 장춘학원 이사장

신정용 신정용

이 사

권기덕 권기덕

이 사

권재주 권재주

이 사

임규봉 임규봉

이 사

서재수 서재수

이 사

심용선 심용선

이 사

김선웅 김선웅

감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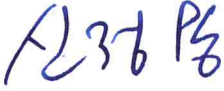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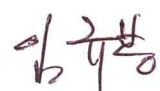
전광표 전광표

감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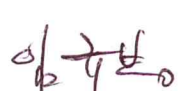
이시우 이시우

대표 간서명	이사장	신정용	이 사	서재수	이 사	임규봉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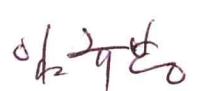
현행 정관		개정(안)	
제31조의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 <u>평의위원회</u>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의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 <u>대학평의위원회</u> ”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4.26.>	
제31조의3(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① <u>평의위원회</u> 평의원은 교원, 직원, 학생, <u>동문</u> , <u>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u>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u>3명</u> 2. 직원 <u>2명</u> 3. <u>학생 1명 (졸업반학생)</u> 4. <u>동문 2명 (졸업생)</u> 5. <u>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u> ② <u>평의위원회</u>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3(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① <u>대학평의위원회</u> 평의원은 교원, 직원, <u>조교</u> , 학생, <u>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u>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6.> 1. 교원 <u>4명</u> 2. 직원 <u>3명</u> 3. <u>조교 1명</u> 4. <u>학생 2명</u> 5. <u>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 1명</u> ② <u>대학평의위원회</u>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단위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4.26.>	
제31조의4(평의위원회의장 등) ① <u>평의위원회</u> 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u>평의위원회</u> 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u>평의위원회</u> 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4(대학평의위원회의장 등) ① <u>대학평의위원회</u> 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8.4.26.> ② 의장과 부의장은 <u>대학평의위원회</u> 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u>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u> <개정 2018.4.26.> ③ 의장은 <u>대학평의위원회</u> 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개정 2018.4.26.>	
제31조의5(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제31조의5(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대표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	-----	---	-----	--	-----	---

현행 정관		개정(안)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다만, <u>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u> ,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u><개정 2018.4.26.></u>	
제31조의6(평의원회의 기능) <u>평의원회</u> 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제31조의6(<u>대학평의원회의 기능</u>) <u>대학평의원회</u> 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u><개정 2018.4.26.></u>	
제31조의7(<u>평의원회의 소집</u>) ① <u>평의원회</u> 는 이사장, 대학교육기관의 장 또는 재적 평의원 2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제31조의7(<u>대학평의원회의 소집</u>) ① <u>대학평의원회</u> 는 이사장, 대학교육기관의 장 또는 재적 평의원 2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u><개정 2018.4.26.></u>	
제31조의8(운영규정) <u>평의원회</u>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의8(운영규정) <u>대학평의원회</u>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u><개정 2018.4.26.></u>	
제46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u>곤란성</u> 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보수) 교원의 보수 <u>및 수당은</u>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u>특성</u> 과 책임의 정도, <u>성과</u> 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u><개정 2018.4.26.></u>	
제52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17.> 2. <u>부총장 등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u> <개정 2015.12.17.>		제52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1. 2. <u><삭제 2018.4.26.></u>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 내지 7인의 교직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5.10.16.>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 내지 9인의 교직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5.10.16., <u>2018.4.26.</u> >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	

대표 간서명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현행 정관	개정(안)
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u>이 경우에는 교원인사업무 소관부서장이 위원장이 된다.</u>	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u><개정 2018.4.26.></u>
제66조(징계의결) ① ~ ② <생략> ③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u>7일</u>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임면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제66조(징계의결) ① ~ ② <생략> ③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u>15일</u> 이내에 그 의 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면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 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u><개정 2018.4.26.></u>
제68조(징계사유의 시효) <u>교원징계의결의 요 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2년을 경 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u>	제68조(징계사유의 시효) <u>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 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 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26.></u> <u>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u> <u>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u> <u>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u>
제74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 무의 <u>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 도록 지급 및 근속 기간에</u> 따라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 <u>및 수당은</u> 일반 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 하여 직무의 <u>특성, 책임의 정도 및 성과에</u> 따라 적당하도록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u><개정 2018.4.26.></u>
	부칙<2018. 4. 2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26일부터 시 행한다.

대 표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	-----	---	-----	--	-----	---